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07 발의연월일: 2021. 8. 4.

발 의 자:윤재갑・위성곤・양정숙

이개호 · 조경태 · 서삼석

소병철・신정훈・설 훈

서동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시설 단 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임업의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'농어업'이라는 용어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, 임산물의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용도로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임산물의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 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 제3호). 법률 제 호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수산물의"를 "임산물・수산물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"간척지활용사업"이란 간척	3
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	
여 농산물·축산물· <u>수산물</u>	임산물•
<u>의</u>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	<u>수산물의</u>
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	
발하는 사업을 말한다.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